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67605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피 고 1. ○○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2. ○○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호사 정○○

3.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이○○

4. ○○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5. ○○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양○○

6. ○○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양○○, 손○○

7.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특별시는 16,389,494원 및 그중 ① 2,952,869원에 대하여 2016. 10. 1. 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8,583,491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4,853,134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특별시 ○○구는 11,706,793원 및 그중 ① 2,109,1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6,131,071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3,466,53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시는 58,763,281원 및 그중 ① 6,440,034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8,847,472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18,390,971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④ 25,084,804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광역시 ○구는 123,716,630원 및 그중 ① 23,702,59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② 32,371,398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③ 33,473,873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④ 34,168,762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도는 11,440,482원 및 그중 ① 1,288,00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1,769,486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3,366,039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④ 5,016,955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광역시는 24,727,440원 및 그중 ① 4,731,11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② 6,467,800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③ 6,694,78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④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6,833,75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대한민국은 614,880,598원 및 그중 ① 76,791,3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1.2%, ② 131,503,04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1.2%, ③ 177,115,050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1.2%, ④ 229,471,208원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 ○○○시, ○○도, ○○광역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 ○○광역시 ○구, ○○광역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별지1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단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취지는 해당 주문 기재와 동일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등

1)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의학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아래 나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구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시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 ○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각 경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경감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등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특별시 ○○구청장, ○○○시장, ○○광역시 ○구청장은 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이 사건 경감 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재산세(토지분, 이하 같다)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부과월 무렵 ○○특별시 ○○구청장, ○○○시장, ○○광역시 ○구청장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구분	귀속연도	과세구분	부과월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특별시 ○○구청장	2016년	정기분	2016-09	16,291,650	3,258,330
	2017년	정기분	2017-09	17,311,130	3,462,220
		수시분[1]	2018-11	29,213,350	5,842,670
	2018년	정기분	2018-09	18,222,510	3,644,500
		수시분	2018-11	30,844,090	6,168,810
	2019년	정기분	2019-09	46,266,140	9,253,220
○○○시장[2]	2016년	정기분	2016-09	15,973,424	3,194,680
	2017년	정기분	2017-09	34,189,890	6,837,970
	2018년	정기분	2018-09	80,401,166	16,080,230
	2019년	정기분	2019-09	99,139,279	19,827,850
○○광역시 ○구청장[3]	2016년	정기분	2016-09	76,239,980	15,238,580
	2017년	정기분	2017-09	141,204,540	28,234,420
	2018년	정기분	2018-09	146,012,870	29,202,570
	2019년	정기분	2019-09	148,902,980	29,780,590

3) ○○○세무서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특별시 ○○구청장, ○○○시장, ○○광역시 ○구청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

1) 이 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은 정기분으로 기납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이 부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세액을 과세내역서(갑 제7호증)의 '재산세(토지) 상한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부분 각 재산세 부과 및 납부세액 부분은 과세내역서(갑 제8호증)의 '재산세(토지) 상한세액' 중 원 이하 버림 금액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각 지방교육세 부과 및 납부세액 부분은 과세내역서(갑 제8호증)의 '교육세'란 기재 금액에 의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특별시 ○○구청장, ○○○시장, ○○광역시 ○구청장, ○○○세무서장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구분	귀속연도	과세구분	부과월	종합부동산세(원)	농어촌특별세(원)
○○○ 세무서장	2016년	최초 처분	2016-11	826,519,060	165,303,810
		최종 경정[4]		775,110,647	155,022,129
	2017년	최초 처분	2017-11	958,445,030	191,689,000
		최종 경정		912,677,820	182,535,564
	2018년	최초 처분	2018-11	1,065,785,470	213,157,090
		최종 경정		1,019,780,154	203,956,030
	2019년	최초 처분	2019-11	1,624,276,280	324,855,250
		최종 경정		1,556,277,273	311,255,454

다.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중 ①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특별시 ○○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특별시에 각 귀속되었고, ②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고 ○○○시에 귀속되었으며, ③ 이 사건 제3 토지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광역시 ○구에 귀속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이 정리한 최종 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2024. 7. 31.자 피고 대한민국 준비서면 3쪽), 이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및 납부액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2)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지방교육세 중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은 피고 ○○특별시,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은 피고 ○○도, 이 사건 제3 토지 부분은 피고 ○○광역시에 각 귀속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라. 관련법령

별지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특별시 ○○구청장, ○○○시장, ○○광역시 ○구청장은 각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한정적 규정이며,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조항의 해석 여부가 여러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어 통일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가)항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과오납한 조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위와 같은 법리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특별시 ○○구청장, ○○○시장, ○○광역시 ○구청장은 각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②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③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19. 12. 3. 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명백한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명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논의의 전제

E연구원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가 제3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5](이하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형1 계산방식'이라 한다),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6](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서 과표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7](이하 '유형3 계산방식'이라 한다),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산출하는 방식[8](이하 '유형4 계산방식'이라 한다),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9](이하 '유형5 계산방식'이라 한다),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10](이하 '유형6 계산방식'이라 한다) 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 유형2 계산방식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5) ㉮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전체면적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한 후, ㉯ 감면분은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 비감면분은 '별도합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 산출된 세액(즉 감면 전 산출세액)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모두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6) ㉮ 과세대상 토지를 경감비율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을 나눈 후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 감면 전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감면분 및 비감면분에 대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 대상토지 중 감면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감면분에 대해서는 종합·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7) ㉮ 재산세 감면대상인 전체 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 이후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8)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등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9)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10)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비율에 따라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3) 피고들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또는 유형4 계산방식

유형1 계산방식 또는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경감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유형1 계산방식 또는 유형2 계산방식은 타당한 정당세액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그대로 계산하거나(피고 ○○특별시의 주장), ② 유형4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한다(피고 ○○특별시, 대한민국의 주장).

나. 판단

1) 어떤 계산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여부(유형2 계산방식)

가) 이 사건 경감 부분[11]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1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감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경감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을 제외한 이 사건 경감규정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순환반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정당세액 계산은 ①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과세대상을 구분한 뒤(과세대상 구분 단계), 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고(과세표준 산출 단계), ③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세액적용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의 구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각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의 과표를 공제하는 것은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사건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 뒤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다시 과세대상의 구분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한 세액계산을 하면 별지3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같은 표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를 위 정당한 세액계산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같은 표 '초과납부'란 기재 금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특별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6,389,494원(= 2016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2,952,869원[12] + 2017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4,165,858원[13] +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4,417,633원[14] + 2019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4,853,134원[15]), ② 피고 ◯◯특

12) 2016년 재산세 초과납부 중 귀속분 2,109,192원(= 4,218,385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6년 지방교육세 초과납부 843,677원

13) 2017년 재산세 초과납부 중 귀속분 2,975,613원(= 5,951,227원 ÷ 2) + 2017년 지방교육세 초과납부 1,190,245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별시 ○○구[16]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11,706,793원(= 2016년도 재산세 중 2,109,192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2,975,613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3,155,458원 + 2019년도 재산세 중 3,466,530원, ③ 피고 ○○○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58,763,281원(= 2016년도 재산세 중 6,440,034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8,847,472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18,390,971원 + 2019년 재산세 중 25,084,804원), ④ 피고 ○○광역시 ○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123,716,630원(= 2016년도 재산세 중 23,702,597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32,371,398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33,473,873원 + 2019년도 재산세 중 34,168,762원), ⑤ 피고 ○○도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지방교육세 11,440,482원(= 2016년도 지방교육세 중 1,288,002원 + 2017년도 지방교육세 중 1,769,486원 + 2018년도 지방교육세 중 3,366,039원 + 2019년도 지방교육세 중 5,016,955원), ⑥ 피고 ○○광역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지방교육세 24,727,440원(= 2016년도 지방교육세 중 4,731,110원 + 2017년도 지방교육세 중 6,467,800원 + 2018년도 지방교육세 중 6,694,780원 + 2019년도 지방교육세 중 6,833,750원), ⑦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614,880,598원(=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76,791,300원 +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131,503,040원 +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177,115,050원 +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229,471,2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관련 법리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

14) 2018년 재산세 초과납부 중 귀속분 3,155,458원(= 6,310,917원 ÷ 2) + 2018년 지방교육세 초과납부 1,262,175원
15) 2019년 재산세 초과납부 중 귀속분 3,466,530원(= 6,933,060원 ÷ 2) + 2019년 지방교육세 초과납부 1,386,604원
16) 피고 ○○특별시의 재산세 부분과 계산식이 동일하므로 계산식은 생략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이다.

4)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을, 그 이후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구체적으로 이를 계산하면 원고에게,

가) 피고 ○○특별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6,389,494원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2,952,869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1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수시분 합계 8,583,491원(= 2017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4,165,858원 +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4,417,633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18]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2019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4,853,134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 ○○특별시가 그 이행의무

17)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부과월 마지막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과월 다음달 15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18) 2017년도, 2018년도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정당세액은 2017, 2018년도 각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수시분 납부일 다음 날로 본다. 이하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특별시 ○○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11,706,793원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재산세 중 2,109,192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수시분 합계 6,131,071원(= 2017년도 재산세 중 2,975,613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3,155,458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2019년도 재산세 중 3,466,53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 ○○특별시 ○○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다) 피고 ○○○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58,763,281원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재산세 중 6,440,034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2017년도 재산세 중 8,847,472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2018년도 재산세 중 18,390,971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④ 2019년 재산세 중 25,084,804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라) 피고 ○○광역시 ○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123,716,630원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재산세 중 23,702,597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 ② 2017년도 재산세 중 32,371,398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 ③ 2018년도 재산세 중 33,473,873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 ④ 2019년도 재산세 중 34,168,762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 피고 ○○도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지방교육세 11,440,482원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지방교육세 중 1,288,002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② 2017년도 지방교육세 중 1,769,486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③ 2018년도 지방교육세 중 3,366,039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 ④ 2019년도 지방교육세 중 5,016,955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 ○○도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바) 피고 ○○광역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지방교육세 24,727,440원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지방교육세 중 4,731,11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 ② 2017년도 지방교육세 중 6,467,8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 ③ 2018년도 지방교육세 중 6,694,78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 ④ 2019년도 지방교육세 중 6,833,75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 ○○광역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사)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614,880,598원과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76,791,3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2. 16.[1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19)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귀속년도 최초 처분 금액은 최종 경정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최초 처분 납부일 다음 날로 본다. 이하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8.까지는 연 1.2%, ②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131,503,04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8.까지는 연 1.2%, ③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177,115,05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8.까지는 연 1.2%, ④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229,471,208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28.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 ○○○시, ○○도,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패소 부분이 근소하므로 이 부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전○○

판사 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별지1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특별시는 16,389,496원 및 그중 ① 2,952,869원에 대해서는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4,165,858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4,417,635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4,853,134원에 대해서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특별시 ◯◯구는 11,706,794원[20] 및 그중 ① 2,109,192원에 대해서는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20) 원고는 피고 ◯◯특별시 ◯◯구에 대한 청구금액 총액으로 '11,706,674원'을 구하고 있으나(2024. 2. 1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3쪽), 피고 ◯◯특별시 ◯◯구에 대한 각 귀속연도별 청구금액의 합계는 '11,706,794원(= 2,109,192원 + 2,975,613원 + 3,155,459원 + 3,466,530원)'이고, 위 청구금액 총액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 각 귀속연도별 청구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2,975,613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3,155,459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3,466,530원에 대해서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시는 60,382,411원 및 그중 ① 6,440,034원에 대해서는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8,847,472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20,010,101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25,084,804원에 대해서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광역시 ○구는 123,716,630원 및 그중 ① 23,702,597원에 대해서는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32,371,398원에 대해서는 2017. 10. 1. 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33,473,873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34,168,762원에 대해서는 2019. 10. 1. 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도는 12,076,462원 및 그중 ① 1,288,002원에 대해서는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1,769,486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4,002,019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5,016,955원에 대해서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광역시는 24,743,330원 및 그중 ① 4,740,520원에 대해서는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6,474,280원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6,694,780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6,833,750원에 대해서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대한민국은 614,880,598원[21] 및 그중 ① 76,791,300원에 대해서는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② 131,503,040원에 대해서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③ 177,115,05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6.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④ 229,471,208원에 대해서는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1) 원고는 2024. 8. 29.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청구금액을 229,471,208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금액 총액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별지2

관 련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 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등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과세대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나.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마.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3. 지방세기본법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가.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산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구)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②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4. 국세기본법 등

가. 국세기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2)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3)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4)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5)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6)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8.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세 액 계 산 표

구분	귀속연도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납부세액	정당세액	초과납부	납부세액	정당세액	초과납부
○○특별시 ○○구청장 22)	2016년	16,291,650	12,073,265	4,218,385	3,258,330	2,414,653	843,677
	2017년	29,213,350	23,262,123	5,951,227	5,842,670	4,652,425	1,190,245
	2018년	30,844,090	24,533,173	6,310,917	6,168,810	4,906,635	1,262,175
	2019년	46,266,140	39,333,080	6,933,060	9,253,220	7,866,616	1,386,604
	소 계			23,413,589			4,682,701
○○○시장	2016년	15,973,424	9,533,390	6,440,034	3,194,680	1,906,678	1,288,002
	2017년	34,189,890	25,342,418	8,847,472	6,837,970	5,068,484	1,769,486
	2018년23)	80,401,166	62,010,195	18,390,971	16,080,230	12,714,191	3,366,039
	2019년	99,139,279	74,054,475	25,084,804	19,827,850	14,810,895	5,016,955
	소 계			58,763,281			11,440,482
○○광역시 ○구청장	2016년	76,239,980	52,537,383	23,702,597	15,238,580	10,507,470	4,731,110
	2017년	141,204,540	108,833,142	32,371,398	28,234,420	21,766,620	6,467,800
	2018년	146,012,870	112,538,997	33,473,873	29,202,570	22,507,790	6,694,780
	2019년	148,902,980	114,734,218	34,168,762	29,780,590	22,946,840	6,833,750
	소 계			123,716,630			24,727,440

22) 이 부분 정당세액에 대하여,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는 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갑 제13호증)에 따른다.
23) 피고 ○○○시, ○○도는 이 부분 관련하여 추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로 납부세액 및 정당세액을 주장하였고(2024. 6. `10.자 피고 ○○도 준비서면 2, 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1

구분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초과납부
		납부세액	정당세액	초과납부	납부세액	정당세액	초과납부	합 계
○○○ 세무서장 24)	2016년	775,110,647	711,104,888	63,992,750	155,022,129	142,220,977	12,798,550	76,791,300
	2017년	912,677,820	799,726,816	109,585,870	182,535,564	159,945,363	21,917,170	131,503,040
	2018년	1,019,780,154	866,062,436	147,595,880	203,956,030	173,212,487	29,519,170	177,115,050
	2019년	1,556,277,273	1,365,051,266	191,226,007	311,255,454	273,010,253	38,245,201	229,471,208
	소 계			512,400,507			102,480,091	614,880,598

쪽), 원고는 이 부분 정당세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2024. 6. 20.자 6회 변론조서), 이 부분 납부세액은 위 추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의미하고, 이 부분 정당세액은 위 추징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액을 의미한다.

24) 이 부분 2016년 내지 2018년 중 각 납부세액 및 정당세액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각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2016년 내지 2018년 중 각 납부세액 및 정당세액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금원을 의미하고(2024. 7. 31.자 피고 대한민국 준비서면 3쪽), 각 환급세액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금액(갑 제13호증)을 의미한다.